

건설사업관리((구)책임감리)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개선방향 도출

한재구, 김영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jghan@kict.re.kr

Deriving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ost calculation standards

Jaegoo Han, Young Hyun Kim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현행 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상의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공사비요율의 대가기준과 건진법의 실비방식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개선 도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1. 서론

‘14.5 전면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이하 실비방식)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안편성지침은 공사비요율(이하 요율방식)을 적용하므로 두 기준 간 차이로 시설물, 사업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용역기간에 민감한 건설사업관리 등은 실비방식에 비하여 요율방식은 기간에 대한 영향이 적고 공사기간이 최대 54개월만 반영이 가능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주청은 예산에 맞추어 건설기술자를 축소 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운영함으로써 배치인원 부족과 업무과중으로 관리부실과 안전사고 증가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상의 전면책임감리의 공사비요율방식과 국토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의 실비방식 등 이원화 된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사, 공단 등 발주청에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에 대한 예산편성시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공사감리비는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 420-05) 목으로

편성되고, 공사비에 감리요율(시설부대경비의 기준단가)을 적용한다.

반면, 예산의 집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림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

구분	‘공사비요율방식’ (기재부)	‘실비정액가산방식’ (국토부)
산정방식	공사비 × 요율	①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 + ② 직접경비 + ③ 제경비 + ④ 기술료 등 합산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재부장관 또는 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2) 문제점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대가 산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발주청은 예산편성 등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며, 두 대가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용어상 기재부는 공사감리비(전면·부분책임),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가 기준의 경우 기재부는 ‘공사비요율방식’, 국토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기재부와 국토부가 제각각 체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발주청에서는 대가산정기준의 차이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세부지침’과 국토부의 ‘용역대가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예산 편성·대가 산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즉, 사업비 편성

은 기재부 법령·기준 등에 따라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은 국토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는 이원적 업무 처리로 사업특성(공사성격, 공사난이도, 공사기간, 지역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예산편성은 실행단계에서 실비방식 대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도로 등 SOC사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업계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비해 대가가 과소(약 30%)산정되고, 저가 산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낙찰 받고 있다. 2020년(1.1~12.31. 공사비 300억 이상)에 나라장터에 공고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 산출기준 용역비 대비 평균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이러한 적정 대가의 미지급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저하 및 대형 건설사고 발생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즉, 적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의 현장 미투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저하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발생 등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주요 개선방향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토대로, 발주처 및 업계, 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용어 사용과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즉,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감리비 관련 용어·대가 기준을 국토부 용어·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을 발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시 기재부와 협의의 거쳐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용어와 대가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용어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둘째,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목적·범위가 일치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필요시 어떠한 사업이 해당되는지 사업의 특성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비요율과 실비방식이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단순 공사의 경우 실비방식이 과대산정되거나, 대규모의 복잡하고 공사기간이 긴 경우 공사비요율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31) 및 미연방기획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122)의 비용산정 원칙을 살펴보면 공사비요율방식 또는 확정가계약방식 (Fixed Contract)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 간소화구매절차 기준금액 (\$100,000, 약 1.2억원)이상의 기술용역계약은 의무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그 이하는 공사비요율방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산정기준 제6조 대가산출의 원칙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을 원칙’으로 하는 강제규정을 개선하여, 단순한 사업 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공사비요율로 적용 할 수 있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세 번째로 기재부에서 예산산정의 편의성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 현행 공사비요율 방식에 고정된 요율값을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에서 동일한 공사비라도 기간과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좀 더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실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중간과정 차원에서 도입,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상의 전면책임감리의 공사비요율방식과 국토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의 실비방식 등 이원화 된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용어 사용과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목적·범위가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기재부 공사비요율 방식에 공사기간과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요율을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서 상기 제시한 3가지 개선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책임감리비 산출방식과 필요 예산 소요연구’과제 연구결과의 일부임.

참고문헌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2019.6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용역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19.12
- [3] 국민권익위,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2021.6